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제1심 가사 재판의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도모하고, 사건처리가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사 단독사건의 관할을 확대 조정함

○ 제1심 가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이 확대됨에 따라 가정법원(지방법원) 항소·항고심과 고등법원 항소·항고심의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의 심판범위를 조정함

3. 주요내용

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의 심판범위를 아래와 같이 상향조정함(안 제3조)

○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9), 10) 사건 및 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나. 고등법원의 심판범위에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아래의 사건을 포함함(안 제4조 제2항 신설)

○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다류 가사소송사건

○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사건

○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사건

4.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 호 2023. . . 공포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2의2호 중 “2억 원”을 각각 “5억 원”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등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다류 가사소송사건
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사건
3.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

한 금액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항의 사건 중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제3조(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 ---------- ---------- ---------- -------.
1.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1. ---------- 5억 원----- ---------- ---------- ---------- ------.
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9), 10) 사건 및 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2. ---------- ---------- ----------5억 원---------- ---------- ----------.
2의2.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2의2. ---------- ---------- ---------- ---------- -------5억 원---------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고등법원의 심판범위)	제4조(고등법원의 심판범위)
(생 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고등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다류 가사소송사건 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사건 3.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연 락 처	(02) 3480-7631